

공정거래법, 38년 만의 전면개편 초읽기

#공정거래법은1980년생 #4차산업혁명대비
#국회통과까지머나먼강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

공정거래법이 전면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둥

1980년 제정 이래 부분 수정만 해왔던 **공정거래법**.

그간 "정합성이 부족하다, 규제 공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올해 초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반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7월 말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하였습니다.

권고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첫째

정보교환만으로도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만 교환했지 합의는 안 했다!"

그동안 담합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방어논리였는데요. 앞으로 이것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안에는 경쟁제한적 정보 교환행위의 규제방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보교환으로 합의를 추정하는 규정을 들지, EU처럼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 를 도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동조적 행위'란 사업자들 간에 합의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행위를 하여 자신들의 사업을 조정(coordination)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U 경쟁당국은 합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정보교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 개념을 이용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동조적 행위의 적용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판결).

둘째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업결합 신고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 이른바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요구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해도 매출 규모가 작으면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 권고안에 따르면, **‘규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 (인수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ART UP

셋째

‘총수일가 사익 편취’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간 이른바 ‘총수일가’가 ①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 지분을 ② 직접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가 적용되었는데요.



권고안에 따르면 ① 지분 기준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②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규제 기준에 미달하였던 기업들에게는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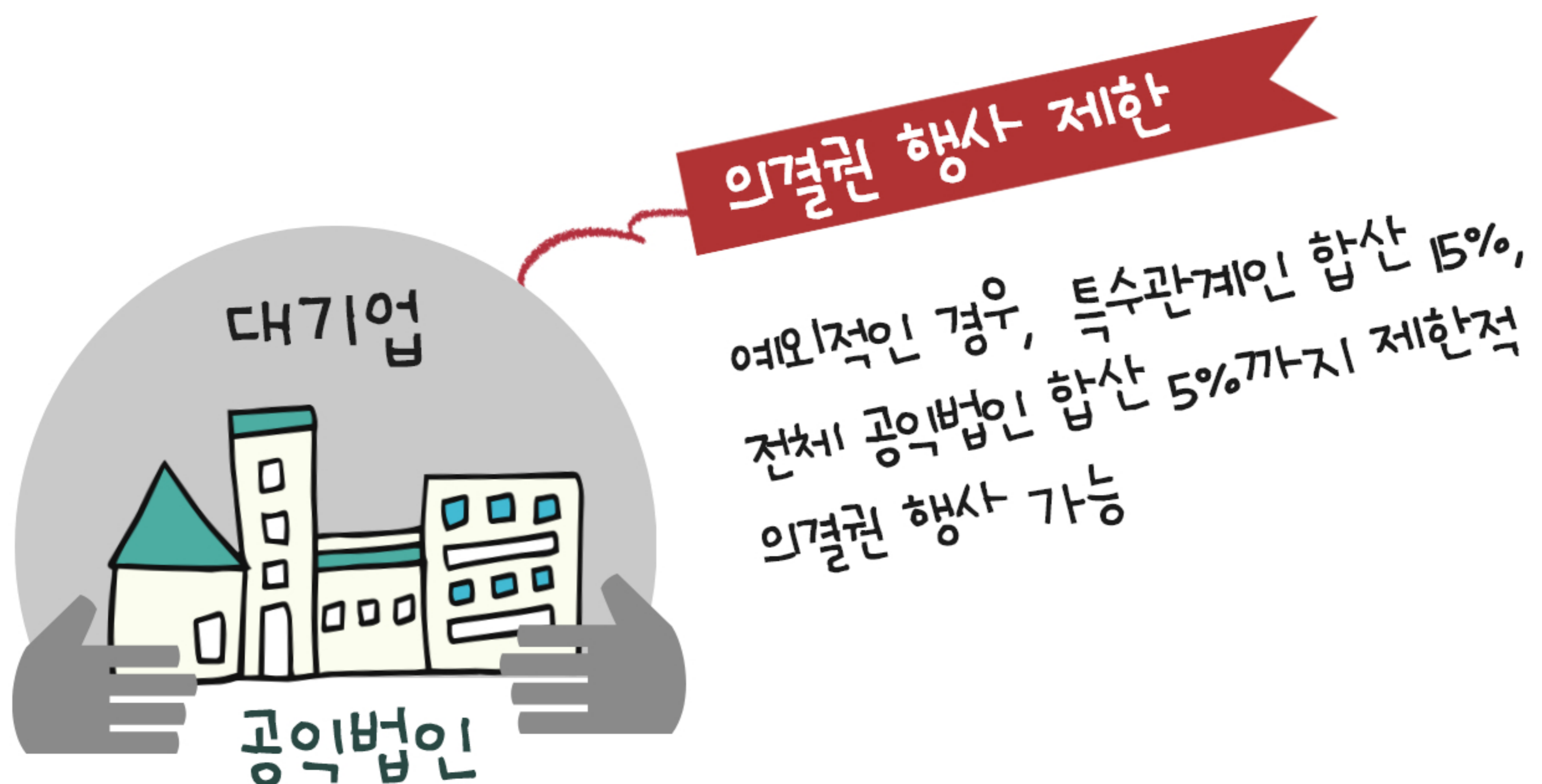


넷째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규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예외적인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까지 제한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해외계열사 공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간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와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현황은 공시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내계열사에 출자관계가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순환출자현황도 공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권고안은,

- ✓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
- ✓ 피조사자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 명문화
-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 ✓ 현장 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 신설
- ✓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 금지
- ✓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명문화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속고발제_중대변화개봉박두 #내일뉴스레터가찾아갑니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권고안



공정이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 개편안 그대로 법이 바뀌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고 8월 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공정이



그러면 8월 이후에 법이 바뀌는 거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법은 규제심사를 거친 다음,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산넘어산

공정이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By failing to prepare, you are preparing to fail").

공정이



.....

저희 공정거래팀으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공정이님이 나갔습니다.
채팅방으로 초대하기

.....

지평 공정거래팀

지평 공정거래팀은 날로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공정거래 규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풍부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법원 행정소송 등 절차에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평 공정거래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T. 02-6200-1720
E. ghkim@jipyong.com



이병주 변호사

T. 02-6200-1765
E. bjlee@jipyong.com



장 품 변호사

T. 02-6200-1766
E. pjang@jipyong.com



이종현 변호사

T. 02-6200-1825
E. jhlee@jipyong.com



표슬비 변호사

T. 02-6200-1889
E. sbpyo@jipyong.com